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12년 3월 30일(금) 오전 9시
2. 장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02-829-8800)
3. 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5기(2011.1.1~2011.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익배당 예정내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1주당 보통주 20원 배당(현금배당 4%)

나) 소액주주 및 일반주주 : 1주당 보통주 70원 배당(현금배당 14%)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nalisa.co.kr),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 3774-3244~5

<송부시한> 2012년 3월 23일

-----절 취 선 -----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3월 30일 개최하는 (주)모나리자의 제35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 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2년 3월 일				
실질주주 성 명 : (인)				
주 소 :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참석 : 본인 신분증
- 대리참석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개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주 식 회 사 모 나 리 자

대 표 이 사 김 광 호 (직 인 생 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여치동 (출석률 : 93%)
			찬 반 여부
1	2011.01.28	내부회계관리자의 1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찬 성
2	2011.02.10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자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불 참
3	2011.02.28	대표이사 보선의 건	찬 성
4	2011.03.04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 성
5	2011.03.04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찬 성
6	2011.03.10	초지기 증설의 건(투자금액 67억원)	찬 성
7	2011.04.28	산업은행 외화운영자금대출 연장의 건(US\$2,300,000)	찬 성
8	2011.05.24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3,000,000,000)	찬 성
9	2011.07.19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 성
10	2011.10.27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의 건(₩3,500,000,000)	찬 성
11	22012.01.13	전주공장 초지기 투자금액 증액의 건(투자금액 98억원)	찬 성
12	2012.02.07	내부회계관리자의 1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찬 성
13	2012.02.08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찬 성
14	2012.02.15	제35기 재무제표 승인 및 현금배당 지급의 건	찬 성
15	2012.03.08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 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000	12,000	12,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4명에 대한 보수한도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 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모나리자 대전 (특수관계인)	매입,매출	2011.01.01 ~ 2011.12.31	352	56.6
(주)윌트론 (특수관계인)	매입,매출	2011.01.01 ~ 2011.12.31	194	31.2
(주)쌍용 C&B (특수관계인)	매입,매출	2011.01.01 ~ 2011.12.31	53	8.5

※ 상기 거래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비율임

※ 2010년 12월말 자산총액 : 622억원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제품원가의 35%~40%가 원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 펄프가격 및 환율변동에 의하여 수익구조가 가변적이며, 생활필수품으로서 계절적 요인 및 경기변동성이 타산업에 비해 적고 생활수준향상과 비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국내·외 실물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1,219억원으로 전년대비 3.7% 매출상승 하였으며, 펄프 등 원재료 가격하락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은 71억원으로 전년대비 65.8%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조공정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격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초지라인 시설증설 신규투자를 통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원가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대표브랜드의 정착과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대표·효자제품으로 매출신장 및 수익성 향상을 동시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화장품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다각화로 기업이미지 개선 및 계속기업의 역할을 다해 나아하겠습니다.

(2)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은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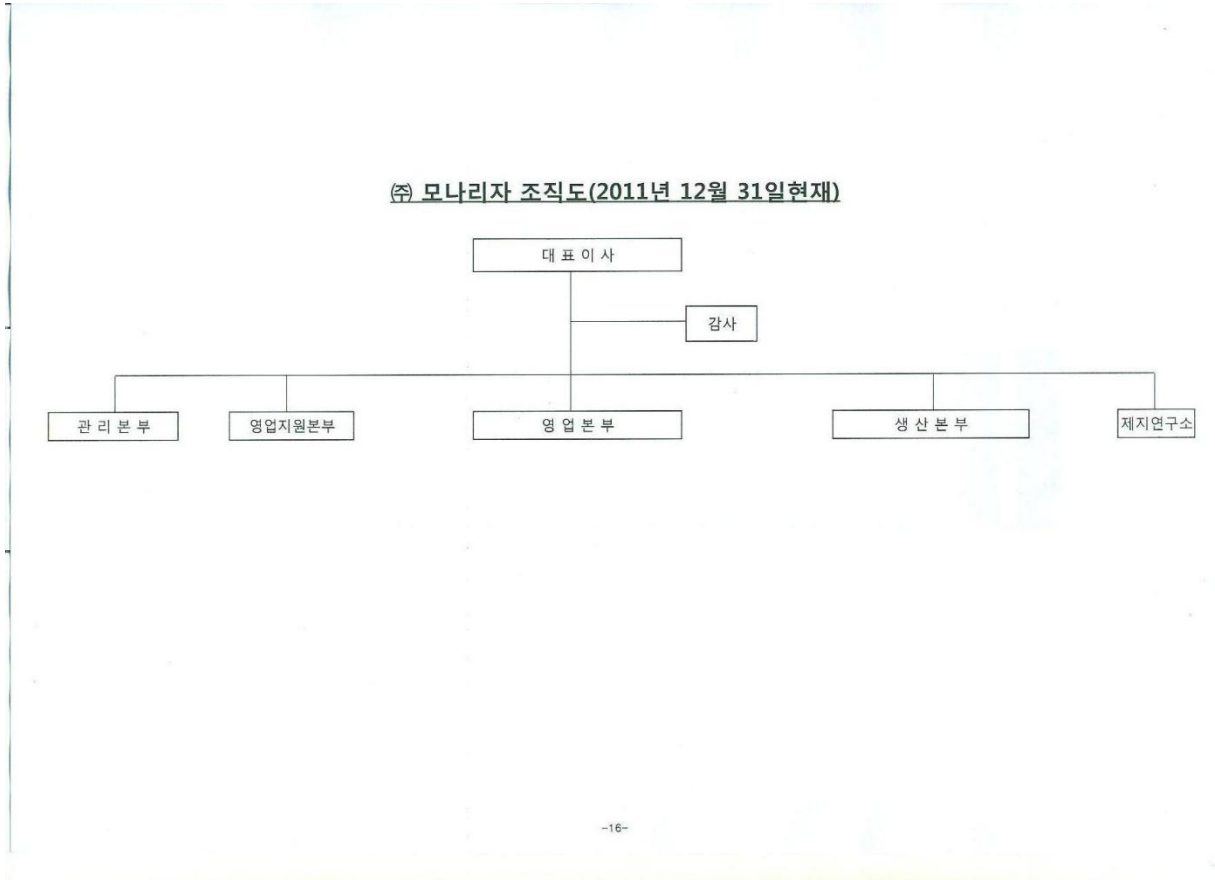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화장지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활필수품으로 계절적 영향이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수의 수요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영업상황의 개요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회사의 현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재무제표는 당사가 2011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직전사업연도(2010년)실적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작성 성 되었음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5 기 2011. 12. 31 현재

제 34 기 201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23,677,475,887		31,979,469,877
1. 현금및현금성자산	1,776,102,153		7,357,213,128	
2. 단기투자자산	-		500,000,000	
3. 매도가능증권	-		511,611,500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815,097,813		15,772,313,022	
5. 재고자산	8,049,427,970		7,803,441,707	
6. 기타유동자산	36,847,951		34,890,520	
II. 비유동자산		35,656,781,357		30,231,977,303
1. 매도가능증권	5,450,000		4,735,000	
2. 유형자산	33,518,730,618		26,938,271,212	
3. 무형자산	28,740,822		32,705,588	
4. 이연법인세자산	1,224,499,204		2,878,041,490	
5. 기타비유동자산	879,360,713		378,224,013	
자산총계		59,334,257,244		62,211,447,180
부 채				
I. 유동부채		18,508,754,589		22,661,561,977
1. 단기차입금	5,652,590,000		10,619,470,000	
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2,856,164,589		11,136,544,854	
3. 기타유동부채	-		905,547,123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Ⅱ. 비유동부채		20,547,170		1,879,277,625
1. 확정급여부채		-	1,847,230,455	
2. 기타비유동부채	20,547,170		32,047,170	
부채총계		18,529,301,759		24,540,839,602
자 본				
I. 납입자본금		22,348,645,682		22,348,645,682
1. 자본금	18,885,627,500		18,885,627,500	
2. 주식발행초과금	3,463,018,182		3,463,018,182	
Ⅱ. 기타자본구성요소		7,643,817,707		7,643,817,707
1. 기타포괄손익누계	7,669,449,327		7,669,449,327	
2. 자기주식	(25,631,620)		(25,631,620)	
Ⅲ. 이익잉여금		10,812,492,096		7,678,144,189
자본총계		40,804,955,485		37,670,607,578
부채와자본총계		59,334,257,244		62,211,447,18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35(당) 기 2011년 01월 0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 34(전) 기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I. 매출액		121,931,365,323		117,552,625,666
Ⅱ. 매출원가		93,815,507,349		92,150,303,753
Ⅲ. 매출총이익		28,115,857,974		25,402,321,913
Ⅳ. 기타수익	380,688,794		579,977,162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V. 기타비용	163,735,568		970,344,263	
VI. 판매비및일반관리비	21,217,460,004		20,721,654,973	
VII. 영업이익		7,115,351,196		4,290,299,839
VII. 금융수익	211,022,697		273,189,069	
VIII. 금융비용	344,837,200		763,970,861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981,536,693		3,799,518,047
X. 법인세비용		1,653,542,286		(2,591,497,346)
X I. 당기순이익		5,327,994,407		6,391,015,393
X II . 기타포괄손익		-		-
X II . 총포괄손익		5,327,994,407		6,391,015,393
XIII. 주당순이익		146		175
1. 기본주당순이익	146		175	
2. 희석주당순이익	146		17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5(당) 기 2011 년 01 월 0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제 34(전) 기 2010 년 01 월 01 일부터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I. 미처분 이익잉여금		10,593,127,446		7,678,144,18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265,133,039		1,287,128,796	
2. 당기순이익	5,327,994,407		6,391,015,393	
합 계		10,593,127,446		7,678,144,189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1,487,718,705		2,413,011,150

과 목	제 35(당) 기		제 34(전) 기	
1. 이익준비금	135,247,155		219,364,650	
2. 배당금	1,352,471,550		2,193,646,500	
가. 현금배당 : 1,352,471,550				
나. 보통주주당배당금(율)				
당기 : 37 원(7.4%)				
전기 : 60 원(12.0%)				
Ⅲ.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9,105,408,741		5,265,133,039

- 최근 2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35(당) 기	제 34(전) 기
주당배당금(원)	37	60
배당총액(원)	1,352,471,550	2,193,646,500
시가배당율(%)	1.28	8.04

※ 배당금 총액은 자사주(10,480 주)를 차감한 금액임.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료)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 식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의 2 종류로 한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료)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	- 개정상법 제 344 조 를 반영하여 문구를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다.</p> <p>② 생략</p>	<p>식으로 한다.</p> <p>② 생략 (현행과 동일)</p>	<p>조정함</p>
<p>제 8 조의 1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당 회사가 발행 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50,000,000 주로 한다.</p> <p>②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배당한다.</p> <p>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 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p> <p>⑥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p>	<p>제 8 조의 1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p> <p>① 당 회사가 발행 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 으로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0 주로 한다.</p> <p>②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p> <p>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p> <p>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p>	<p>- 개정상법 제 344 조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함</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p>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 2 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p>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 2 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3 조 (신주인수권)</p> <p>① ~ ② 생략</p> <p>< 신 설 ></p> <p>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결의로 한다.</p>	<p>제 13 조 (신주인수권)</p> <p>① ~ ② (현행과 동일)</p> <p>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좌 동</p>	<p>- 개정상법 제 418 조 제 4 항에서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발행관련 사항 중 일부를 주주에게 통지 또는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p>
<p>제 14 조 (시가발행)</p> <p>① 당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p>	<p>제 14 조 (사채의 발행)</p> <p>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 사채발행에 관한 일 반규정 및 개정상법 제 469 조 제 4 항에 따라 사채발행사항에 대</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② 제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 13 조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할 수 있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생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p>한 결정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p>
<p>제 24 조의 1 (이사회 의결방법)</p> <p>①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 수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 신 설 ></p> <p>②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24 조의 1 (이사회 의결방법)</p> <p>①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좌 동</p>	<p>- 개정상법 제 391 조를 반영하여문구를 조정함</p>
<p>제 24 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직무)</p> <p>① ~ ③ 생략</p> <p>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 신 설 ></p>	<p>제 24 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직무)</p> <p>① ~ ③ (현행과 동일)</p> <p>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 ~ 3. (현행과 동일)</p> <p>4.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5. 4의 청구를 하였는데도</p>	<p>- 개정상법 제 412 조의 4에서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을 명시함에 따라 동내용을 반영</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4.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한다.</p>	<p>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6.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7. 좌 동</p>	<p>- 개정상법 제 412 조의 제 3 항에서 감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권을 명시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규정 반영</p>
<p>< 신 설 ></p>	<p>제 24 조의 3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경감)</p> <p>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다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개정상법 제 400 조 제 2 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책임경감 근거 규정을 신설함</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29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p> <p>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p>< 신 설 ></p> <p>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제 29 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p> <p>① 좌 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 동 2. 좌 동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p>② 당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 좌 동</p> <p>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p>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 개정상법 제 447 조에서 재무제표를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일부 회사에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p> <p>- 개정상법 제 449 조의 2 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일정한 조건하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반영</p> <p>- 개정상법 제 449 조의 2 에 의거 재무제표확정을 정관의 근거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 결정도 가능함 - 문구변경</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③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 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복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회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 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⑦ 회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제 29 조의 1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가 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p>
<p>제 30 조의 2 (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p>	<p>< 삭 제 ></p>	<p>- 개정상법 제 341 조 및 제 343 조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가능이익한도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자본감소를 제외한 주식의 소각(이익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이를 반영</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1 조 (이익 배당금)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 31 조 (이익 배당금)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동일)	- 개정상법 제 462 조의 4 에서 정관으로 현물배당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부 칙 < 신 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8 조의 1, 제 13 조, 제 14 조, 제 24 조의 1, 제 24 조의 2, 제 24 의 3, 제 29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의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 부터 시행한다	- 상법의 시행시기가 2012. 4. 15.부터 이므로 정관 개정 내용의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둠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 광 호	1953. 07. 03	-	본 인	이사회
임 영 수	1963. 03. 29	-	없 음	이사회
강 명 우	1968. 03. 16	사외이사	없 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김 광 호	(주)모나리자 대표이사	(주)모나리자 대표이사	없 음
임 영 수	(주)모나리자 이사	(주)모나리자 이사	없 음
강 명 우	(주)프랭클린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주)프랭클린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지 승 배	1962. 10. 30	없 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지 승 배	유니인텍 대표이사	유니인텍 대표이사	없 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1)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